

- 당진항만관광공사 자체 종합감사 -
감사 결과 처분 내용

2021. 9.



당진시
(감사법무담당관)

I. 감사 개요

- 감사대상 : 당진항만관광공사
- 감사기간 : 2021. 6. 7. ~ 6. 25.
- 감사범위 : 2018. 6. 1. ~ 2021. 5. 31.
- 감사인원 : 감사팀장 외 3인

II. 감사 성과

○ 행정상

(단위 : 건)

계	처 분 지 시				비 고
	시 정	주 의	개선요구	현지처분	
2	1	1	-	-	

○ 재정상

(단위 : 원/건)

계	변 상	추 징	회 수 등	기 타
72,000 / 1	-	-	72,000 / 1	-

III. 감사 결과 처분 요구 사항

연번	제 목	지적사항 심의 내용				
		행정상		재정상(원)		
		시정	주의	변상	추징	회수 등
	2건	1	1			1 (환수 72,000)
1	계약 및 공사관리 업무 소홀		○			
2	회계 및 결산 업무 소홀	○				○ (환수 72,000)

① 계약 및 공사관리 업무 소홀

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시행령 제32조(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)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른법령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 등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수의계약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.
 - ⇒ 2019년 「왜목마을 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 숙박계약」을 체결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개인과 계약 체결한 사실이 있다.
-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에 따라 감독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
 - ⇒ [표1]과 같이 17건의 공사계약 건에 대하여 공사감독일지 미작성,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미이행, 준공검사원 접수 및 공사감독조서 작성을 미이행하는 등 공사계약절차 이행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- 「충청남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」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에(종합건설공사는 5억 원 이상) 대해서는 충청남도 계약심사 부서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.
 - ⇒ 2019년 「함상공원 군함도색 및 기타부대공사」에 대하여 계약심사를 의뢰하지 않는 등 계약심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[표2]
- 건설공사의 공사비 산정기준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제45조 규정에 따라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여야 하며, 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에 따라 거래실례가격이 없고 원가계산이나 표준시장단가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감정평가,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으로 할 수 있다.
 - ⇒ 2019년 「군함 웬스 보수공사」발주시 조달청종합쇼핑몰에 현장설치도로 등록되어 있는 웬스를 적용하지 않아 철거비 2,200천원을 별도 계상하더라도 조달청 제품 비교시 6,649천원, 지역업체 조달제품과 비교시 5,546천원 과다하게 발주하는 등 공사설계·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[표3]
- 「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」제2장제5절제1관4.라(계약담당자의 주의사항)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(이하 “면세업체”라 한다)와 과세되는 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작성하되, 면세업체에 대해서는

② 회계 및 결산 업무 소홀

- 「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4조(지역개발채권의 매입대상 및 기준)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전액을 출자·출연한 법인과 건설공사 도급계약,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·수리·제조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는 [별표1]의 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하고, 제5조(지역개발채권의 매입면제)따른 매입 면제대상은 [별표2]와 같다.
 - ⇒ 2018~2020년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는 [표1]과 같이 공사 18건 16,465천원, 용역 28건 12,365천원, 물품구매·수리·제조 1건 35천원 등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.
- 「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」 제23조의 2(세출예산 집행기준)관련 [별표5]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세부집행규정에 따르면 국가(지방)단위 행사참석 실비, 산업시찰, 견학 참여를 위한 실비는 행사실비지원금(행사실비보상금)에서 지급하되 국내에 한하며, 급량비는 매식비 기준단가(1인/1식/8,000원)에 준하여 지급하게 되어 있다.
 - ⇒ 당진항만공사에서는 2019년 「포트세일즈 당진항 팸투어(5,6회차 식대/○○○○학교 견학)」 참여자 급식비의 2건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고 급량비 기준액인 1인당 8천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다.[표2]
- 당진항만관광공사에서는 당해 사업연도 영업활동의 결과인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재무제표로 확정하고, 지방공기업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지니는 외부이용자 및 지방자치단체, 내부관리자 등 정보이용자에게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66조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 후 결산서류와 회계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,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르면 결산서 작성의 책임은 각 지방공기업 경영자(관리자, 관련 임원)에게 있으며, 기관장은 자체 결산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결산담당자 교육기회 확대, 회계업무 전문인력 확충, 회계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결산서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 - ⇒ 2018~2020년 당진항만관광공사 결산서를 보면 2018년 퇴직급여 -1,962,514, 여비 -144,240원에 대하여 불용액이 (-)처리되어 있고, 2019년 사무관리비가 미지급비용으로 -31,896,250원, 2020년 -28,239,129원으로 채무확정액 보다 지출액이 크게 적용되어 있는 등 결산서 작성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.

【 처 분 요 구 】

미매입된 지역개발채권과 과지급된 식대를 완수하는 등 시정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, 관련 규정을 연산하여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를 철저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.